

창원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247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변 론 종 결 2022. 6. 14.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과 주식회사 G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12. 17.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는 13,793,334원, 피고 C은 2,471,305원, 피고 D는 8,505,889원,

피고 E은 977,027원, 피고 F은 2,988,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G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가소9144호)에 원고가 2015. 11. 20.부터 2016. 1. 16.까지 G에 납품한 건축자재에 대한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2018. 9. 4.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2018나5239호)에 항소하여 2019. 7. 3. 위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442,1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7. 25. 확정되었다.

나. G과 피고들 사이의 채권양도양수

1) G은 2015. 10. 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거창군 I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7.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들은 G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한 인부들이다.

2) G은 H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8. 12. 17. G의 H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B에게 170,000,000원, 피고 C에게 30,000,000원, 피고 D에게 105,000,000원, 피고 E에게 12,110,000원, 피고 F에게

145,890,000원, 합계 50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이라 한다)하여 피고들이 H로부터 직접 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18. 12. 20.경 H에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G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2015. 11. 20.부터 2016. 1. 16. 사이에 발생한 채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전에 이미 발생하였고, G은 피고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들과 G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원금 17,442,183원 및 2016. 1. 31.부터 2019. 7. 3. 까지 이자 3,581,142원과 2019. 7. 4.부터 2022. 6. 14.까지 이자 7,712,789원을 합한 28,736,114원을 각 양도받은 금액에 비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그 행위의 사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G의 채무는 원고에 대한 17,000,000원 가량의 물품대금채권, 피고들의 임금 채권과, 마산세무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체납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 금액인 500,000,000원이 G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G의 채무초과상태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G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은 H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들이 H로부터 직불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와 결과에 있어 경제적인 목적의 정당성과 그 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된다. ③ G이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아

별지